

제213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례안상정

(조례 25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페이지
2015-68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1
2015-69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70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71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5-72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1
2015-73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3
2015-74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25
2015-75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5-76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33
2015-77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9
2015-78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41
2015-7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5
2015-80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	51
2015-81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2015-82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2015-8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2015-84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2015-85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9
2015-86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2015-87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2015-88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2015-89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2015-90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2015-91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2015-92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23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8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비로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한 번에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 시 편의를 제공하고,

○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여 통합·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나. 공포번호 작성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제20조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 제3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개혁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17. ~ 9. 0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

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해당 입법
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
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포)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공포하되,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이 경우 공포번호는 조례·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9조(준용) 자치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훈령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거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거창군 공고 제 호

거창군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자치법규명

- ※ 제정의 경우: 거창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의 경우: 거창군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거창군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

3. 제정(개정·폐지) 조례(규칙)안: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실·과소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부서
 우편번호:51032, 전화: , 팩스: 이메일: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69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고령 참전수당 수령자의 수혜기간을 감안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전국 최초 명예수당 지급 자치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사업 삭제(안 제7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명시된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함.

나. 지급기준 개정(안 제10조제2항제1호)

○ 명예수당 : 현행(월 8만원) ⇒ 개정(월 10만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173백만원(2016년도 본예산 확보 계획)

다.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5. ~ 10.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월 8만원”을 “월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u> 2. <u>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사업</u> 3. <u>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u> <p><u>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명예수당 : 월 8만원</u> 2. <u>사망위로금 : 30만원</u> 	<p><u><삭 제></u></p> <p><u>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월 10만원</u> 2.-----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0조제2항 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 월 10만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세출 (a)	군비			173	156	135	115	92	671
세입 (b)	이자 및 기타수익			0	0	0	0	0	0
총 비용(a-b)				173	156	135	115	92	671

3. 관련 의견

○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동 순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0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위임 없이 원칙적으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함(안 13조)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제8조·제11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13조)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15. ~ 10. 0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린이집

제11조제1호 중 “탁아소, 유아원”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 이후에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중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및”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u>탁아소</u> 4. ~ 7. (생략) 8. <u>유아원</u> <p>② (생략)</p> <p>제11조(사용허가)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로당, <u>탁아소</u>, <u>유아원</u>, 구관장, 이·미용실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 3. (생략) <p>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u>전부</u>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 <u>전부</u> 3. <u>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전부</u> 4. <u>사용 예정일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u>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u>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u>」, 「<u>거창군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u>어린이집</u> 4. ~ 7. (현행과 같음) <p><삭 제> 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허가)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어린이집</u>----- ----- 2. ~ 3. (현행과 같음) <p>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정일 이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현행 제1항과 같음) <삭 제></p> <p>제23조(준용) ----- ----- 「<u>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u>」, 「<u>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u>」 및 ----- -----</p>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1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의 우선 대상을 확대함(안 제1조·제2조)

-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나.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계약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삭제함(안 제8조제2항)

다.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요구사항 변경함(안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8조제2항)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5. ~ 10.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별지 제1호·제2호서식)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p> <p>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제8조(계약의 해지) ①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p>	<p>제8조(계약의 해지)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대상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사람
3	장애등급 1~6급 일반장애인	65세 이상 일반노인	일반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자택: 휴대폰:		
	주소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영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노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	<input type="checkbox"/> 20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비과세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의세대주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장애, 질병)	직업	월소득 (천원)	비고
<p>「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거창군 수귀하</p>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2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폐지이유

○ 「기초연금법」(‘14.5.20.제정)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 호와 관련 지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제4항(비용의 분담 등)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1. ~ 10.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3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사회보험과 관련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군으로 분류한 중앙정부의 권고안에 따라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 호와 관련 지침
-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1. ~ 10. 1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4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폐지이유

○ 정부사업으로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거창군 조손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양육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어, 이는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 정비 사업으로 권고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조손수당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659(2015.8.13.)」 호와 관련 지침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처리지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201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35호, 위임행정규칙)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3. ~ 10.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5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5.1.20)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5조제1항)

-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의회제출

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 (변경)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 신설 : 조례로 위임된 민간위원 자격 및 심의회 소집 및 정족수 등
- 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조항 신설(안 제30조제5항)

- 감경률 100분의 3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법」 제10조·제16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의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문화관광과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완화(안 제30조제5항)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18. ~ 9. 0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제목 “(공유재산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를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제6호를 제4호·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④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민간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한다.
-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 ⑨ 심의회에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 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⑪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29조 중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u>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u>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u>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u>영 제7조제2항</u>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u>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u> 법 제16조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u>군정조정위원회</u>에서 대행한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 3. (생략)</p> <p>4. <u>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u></p> <p>5. ~ 6. (생략)</p> <p>③ <u>제2항의 규정에도</u>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u>영 제7조2항</u>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p> <p>2. ~ 4. (생략)</p>	<p><u>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u> ----- ----- ----- ----- ----- <u>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u>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영 제7조제1항</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u></p> <p>① <u>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 제4항</u>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u>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u>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u>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 5. (현행 제5호·제6호와 같음)</p> <p>③ <u>제2항에도</u>----- ----- -----</p> <p>1. <u>영 제7조3항</u>----- -----</p> <p>2.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생략)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④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또는 조교수 이상 2.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민간위원 중 위원외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급한 안전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에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⑩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7조제5항----- -----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④ <u>법 제27조제4항</u>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 ⑥ (생략)</p>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u>다만, 제1호의 경우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u></p> <p>1. 연간 대부료가 <u>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u></p> <p>가. <u>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u></p> <p>나. ~다. (생략)</p> <p>2.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29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u>100분의 10 이상</u>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 및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②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④ <u>법 제27조제6항</u>-----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단서 삭제></u></p> <p>1. -----<u>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u> <u><삭 제></u></p> <p>가. ~ 나.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대부료의 조정) ----- -----<u>100분의 5 이상</u>----- -----</p> <p>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3제9항-----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관광진흥법</u>」 제76조제3항 및 「<u>관광진흥법 시행령</u>」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u>사용료 및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u></p>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6
----------	-----------

제출일자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나.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지원 대상사업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의 개최
-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 지원제외 :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 또는 영리단체, 일회성 행사 또는 사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661,625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예산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1 ~ 10. 01.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요약서 붙임)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반영 여부
(사)한국예총 거창지부	<p>○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총”을 구체적 명시</p> <p>○제2조(정의)의 3호 신설 요청 -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거창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p> <p>○제7조(지원범위) 신설 요청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p>	<p>○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p> <p>○운영비는 조례가 아닌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음</p> <p>○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2016년도 운영비 지원에는 문제가 없음.</p> <p>○또한 지원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개정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p>	미반영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를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등을 개발·보급하며, 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

2.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5. 지역 문화시설의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6.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7.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활동
 8.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 ③ 군수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이거나, 영리 단체, 일회성 행사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신청, 절차,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문화 지원사업(제6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제 및 축제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한마당 대축제 및 부대행사 ○ 아림예술제, 거창예총제 등 군단위 행사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 ○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면단위 이상의 지역 고유의 축제
지역문화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지 발간, 백일장 개최, 문화강좌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지역 예술단체의 전시회, 음악회, 연주회, 합창제, 발표회 등 공연 전시 활동 ○ 연극제의 개최, 참가 등 연극 활성화 활동
지역문화 국내·외 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국제교류 활동, 경연대회 참가 ○ 도 단위 이상 지역문화 활동, 경연대회 참가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등 보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물 등의 제작 ○ 향토사를 기반으로 하는 책자 발간
지역 문화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을 위한 영화관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광투어 프로그램 운영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윤리 전승보급 및 봉축 행사 ○ 충효·예절교육, 성년례 등 전통 재현행사 ○ 3.1민속문화제 등 지역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행사

거창군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 관련 조문 : 제6조(지원사업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662	662	662	662	662	3,310	
세출	국비						
	도비						
	군비	662	662	662	662	662	3,310
	소계(a)	662	662	662	662	662	3,310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육성하여 지역 문화 창달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군민 문화 향유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문화예술 : 29건 289,925천원
- 전 통 : 12건 91,700천원
- 축 제 : 2건 107,000천원
- 기 타 : 4건 173,000천원

작성자 : 문화관광과장 최종승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7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폐지이유

○ 예술창작스튜디오의 관리 소홀 및 운영 부진으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미 그 효력을 잃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유형 5)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1885호(2015.3.10.)관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5. 11. ~ 5. 3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8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존·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향토문화유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보존관리 및 제외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기록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 220백만원(2016년 본예산 확보 계획)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25. ~ 10. 1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이 있는 향토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유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적(이하 “문화유적”이라 한다)”이란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나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후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조물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적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유적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수비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유적 1개소당 보수비 지원한도 : 최대 1천5백만원 이내
2. 보조율 : 군비 70퍼센트 이내

②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문화유적을 선정할 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른 3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郡史) 및 군내 지역문화유산 관련 책자 수록 여부

다만, 미 수록 유적의 경우 건립시기, 내력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한다.

2. 문화유적의 건립시기, 보수대상(주요건물, 부속시설 등)

3. 보수의 긴급성, 관리상태(이미 지원받은 문화유적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은 후 5년 동안의 관리상태 포함),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존관리 및 제외기준) ①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문화유적을 성실히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문화유적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유적과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가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문화유적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이 우려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기록 작성·보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시행한 문화유적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과 기록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4조(보조금의 지원)
- 나.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 다. 제6조(보존관리 및 제외기준)
- 라. 제7조(기록 작성·보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출	국비	-	-	-	-	-	-
	군비	220	220	220	220	220	1,100
	소계(a)	220	220	220	220	220	1,100
총 비 용(a-b)		220	220	220	220	220	1,100

3. 관련 의견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의견듣기
- 향토문화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관리의무
- 최근 5년이내 보조금 지원받은 향토유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방치시 추가 훼손 우려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 예외
- 소유자나 관리자는 보조금 지원받아 보수정비 주변경관을 고려
하고, 가급적 원형훼손 금지

작성자 : 문화관광장 최 종 승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79
----------	-----------

제출일자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12. 2. 1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의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작은도서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
 - 법인·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여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안 제3조)

-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 문화활동 지원 및 지역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안 제5조)

- 지원기준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 지원범위 : 도서 및 자료구입,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구입,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 지원

라. 작은도서관 운영기준(안 제6조 ~ 제14조)

- 공간과 위치,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시간, 휴관일, 안전 등
- 작은도서관별로 지역주민이 1/2이상 포함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제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 42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25. ~ 9.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 및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 및 자료 구입
2.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 구입

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사업지원

제6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 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1일 6시간은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 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최 중 승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0
----------	-----------

제출일자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보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안 제3조, 별표)

○ 위반행위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안 제4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추진담당)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07. ~ 9. 3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서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1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제8조)

○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등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2조·제7조)

○ 자 또는 단체 ⇒ 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6조, 8조, 10조

나. 예산조치 : 1,010백만원(2016년도 예산확보 계획)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1. ~ 10. 12.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호·제2호 중 “자 또는 단체”를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2.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3.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5. 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8. 전문체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 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 략)</p>	<p>제2조(정의) ----- 뜻은----- 1. ~ 6. (현행과 같음)</p>
<p>제6조(학교체육의 진흥)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군수는 경상남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포상) ① ~ ② (생 략)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u>자 또는 단체</u></p> <p>2. 체육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u>자 또는 단체</u></p> <p>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p> <p>④ (생 략)</p>	<p>제7조(포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 -----<u>자</u></p> <p>2. ----- -----<u>자</u></p> <p>3.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경비의 지원) ① (생 략) ②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u></p> <p>2. <u>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u></p> <p>3. <u>국내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u></p> <p>4. <u>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보급</u></p> <p>5. <u>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u></p> <p>6. <u>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u></p> <p>7. <u>학교체육 우수 운동경기부의 육성</u></p> <p>8. <u>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8조(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p> <p>1. <u>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u></p> <p>2. <u>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지원</u></p> <p>3. <u>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u></p> <p>4. <u>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u></p> <p>5. <u>체육지도자,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u></p> <p>6. <u>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p> <p>7. <u>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u></p> <p>8. <u>전문체육 활동 지원</u></p> <p>9. <u>장애인체육 활동 지원</u></p> <p>③ 제2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별표]

경비 지원대상 사업(제8조제2항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내용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도단위, 자체체육행사 대회 개최 및 참가 ○ 군민·면민체육대회 개최
체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회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지원
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체육대회 유치·개최 ○ 자매결연단체 간 체육대회 개최 ○ 직장인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및 여가체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생활체육활동 시설 등 여건 조성 ○ 체육마우처 지원
전문체육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체육 활성화 사업 지원 ○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 장애인체육 동호회 활동 지원

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 관련조문
 -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육성 지원)
 - 제8조(경비의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1,010	1,010	1,010	1,010	1,010	5,050
세출	국비					
	도비					
	군비	1,010	1,010	1,010	1,010	1,010
	소계(a)	1,010	1,010	1,010	1,010	1,010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지역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육성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군민 체육 향유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작성자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두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2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센터 내 볼링장 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사용료 기준을 마련함.

○ 사회·경제·문화적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사용료 경감
대상에 반영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일부 조정함(안 제6조)

○ 볼링장과 탁구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나. 100분의 50 사용료 경감 대상 추가함(안 제15조)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 볼링장 사용료 기준 신설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1. ~ 2015. 10. 0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제15조제4항)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체육센터

가. 수영장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 탁구장, 볼링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포함)

제15조제4항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별표 중 국민체육센터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u>1. 국민체육센터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u></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략)</p> <p>④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배우자 및 유족 중 선순위자를 말한다)</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⑤ ~ ⑥ (생략)</p>	<p>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 -----</p> <p><u>1. 국민체육센터</u></p> <p><u>가. 수영장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u></p> <p><u>나. 탁구장, 볼링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공휴일 포함)</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1.----- 2.----- ----- ----- -----</p> <p>3.----- ----- -----</p> <p><u>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u></p> <p><u>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별 표]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 국민체육센터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어린이노인	청소년군인	일반인	비 고
수영장	1회권	개 인	1,500	2,000	2,500	1회 2시간
		단 체	1,300	1,700	2,200	“
	월사용	1개월	30,000	40,000	50,000	“
		12회	16,000	21,000	27,000	“
탁구장	1회권	개 인	1,000	1,500	2,000	1회 1시간
	월사용	1개월	15,000	20,000	25,000	“
		12회	11,000	15,000	18,000	“
볼링장	<u>1회권</u>	<u>개인</u>	<u>1,500</u>	<u>2,000</u>	<u>2,500</u>	<u>1회 1게임</u>
	<u>월사용</u>	<u>1개월</u>	<u>30,000</u>	<u>40,000</u>	<u>50,000</u>	<u>1일 2시간</u>
		<u>12회</u>	<u>15,000</u>	<u>20,000</u>	<u>25,000</u>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3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건전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변경하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문화활동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변경(안 별표 2)

다. 사용료 감면을 변경(안 별표 3)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

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삭제(안 제13조제3항)

○ 사고발생 시 사용자에게 대한 민·형사상 책임 전가규정 삭제

마. 인용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 및 띄어쓰기

○ 전염병 ⇒ 감염병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4장, 제6장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예산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규제개혁,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삭제(안 제13조제3항)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4. ~ 8.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별표3)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정지원)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전염병질환자”를 “감염병질환자”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규 격	요 금		
		비 수 기 중	비 수 기 말	성 수 기
캐빈하우스(4동)	복층, 6인용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방갈로(3동)	단층, 4인용	60,000원	80,000원	120,000원
전기데크(9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25,000원	30,000원	30,000원
일반데크(5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15,000원	20,000원	20,000원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0조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p> <p>3. ~ 5.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운영)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① (생 략)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u>전염병질환자</u>나 그 밖에 이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p> <p>③ (생 략)</p>	<p>제1조(목적) ----- 「<u>청소년 기본법</u>」 ----- ----- 「<u>청소년활동 진흥법</u>」 ----- ----- ----- ----- -----</p> <p>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청소년활동 진흥법</u>」 (이하 “법”이라 한다)----- ----- 3. ~ 5.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재정지원) 군수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문화활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5조(운영) ----- ----- 「<u>청소년 기본법</u>」----- -----</p> <p>제10조(사용 및 사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감염병질환자</u>-----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u>반환할 수 있다.</u> ③ (생략)</p> <p>제13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u>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u></p>	<p>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반환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손해배상 등) ① ----- ----- ----- ② ----- ----- ----- ----- ----- <삭 제></p>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1항 관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 한정한다.)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00분의 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 비고 : 면제 또는 감경사유 증명서류 첨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청소년행사 및 축제 지원 보조금 근거 마련 (신설 조문 조례 제4의2)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행사 및 축제에 군비 보조로 사업수행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15년)	2차년도 (16년)	3차년도 (17년)	4차년도 (18년)	5차년도 (19년)	합계
총 비용(a - b)	55	55	55	55	55	275
세출	군비	55	55	55	55	275
	소계(a)	55	55	55	55	275
세입	0					
	0					
	소계(b)					

3. 관련 의견 : 거창군 자체 예산 보조

II. 비용추계 상세 내역 : 2015년 예산서 참조

작성자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 중 두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4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민법」이 개정('13.7.01.시행)되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민법」에 맞게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용어 변경함(안 제2조제2항)

- 금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 한정치산자 ⇒ 피한정후견인

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순화함.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제22조 ⇒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제27조
- 지득한 ⇒ 알게 된, 인 ⇒ 명, 기타 ⇒ 그 밖의, 당해 ⇒ 해당
규정에 의하여 ⇒ 에 따라, 자 ⇒ 사람,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 추가함(안 제9조제1항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9조·제12조, 「청소년 기본법」 제2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8. 4. ~ 8. 2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제9조제1항단서)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 기본법」 제27에 따라”로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으로 한다)”을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으로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제3조 중 “자”를 “사람”으로 “관할지역안”을 “관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 중 “인”을 “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 제목 “(지도위원의 의무)”를 “(지도위원의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사회내”를 “지역사회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제5조제2항 중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을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중 “제5조 제1항 각호”를 “제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뒷면란 중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u>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u>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u>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u>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 ②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금치산자</u> 2. <u>한정치산자</u> 3. <u>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u> <p>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u>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u>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u>당해</u> 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p> <p>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u>당해</u>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u>기타</u>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u>청소년 기본법</u>」 제27조에 따라----- -----<u>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u>----- -----</p> <p>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① <u>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u>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u>청소년 기본법</u>」 제21조에 따른----- -----<u>사람</u>----- -----<u>사람</u>----- 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u>사람은</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피성년후견인</u> 2. <u>피한정후견인</u> 3. -----<u>사람</u> <p>제3조(위촉절차) ----- -----<u>사람</u>-----<u>관할</u> ----- <u>해당</u>----- -----</p> <p>제4조(지도위원의 수) ----- -----<u>명</u>-----<u>해당</u>----- -----<u>그 밖의</u>-----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도위원의 의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4. <u>지역사회내의</u>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p> <p>5. (생략)</p> <p>6. <u>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u></p> <p>② 지도위원은 그 <u>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u>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p> <p>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u>제5조 제1항 각호</u>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서 신설></p> <p>② (생략)</p>	<p>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 -----<u>각 호</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지역사회에</u>-----</p> <p>5. (현행과 같음)</p> <p>6. <u>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u></p> <p>②-----<u>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u>-----<u>그 밖의</u>-----</p> <p>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 -----<u>제5조제1항 각 호</u>-----</p> <p>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p> <p><u>다만,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5
----------	-----------

제출일자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안 제4조)
- 마. 관리주체의 안전 의무이행 사항(안 제5조)
- 바. 안전점검 결과 기준 미달에 대한 조치 사항(안 제6조)
- 사. 안전감시망 구축 및 업무의 분담(안 제7조, 안 제8조)
- 아.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9조)
- 자. 표창(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8. 21. ~ 2015. 9.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모래, 고무재)의 정비(교체, 보충,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
5.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해치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에서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한다.
②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6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 보조금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 마련
- 환경조사 결과 공표 의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군민 정보보호 도모

2. 주요내용

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시기 변경(안 제9조)

- 5년 마다 ⇒ 10년 마다
- ※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기 10년

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구체적 명시(안 제17조)

-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 환경보전을 위한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홍보·복원 활동
-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다. 군내 정기적 환경질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표 조항 삭제(안 제25조)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함

- 이라함은 ⇒ 이란, 타 ⇒ 그 밖의, 인 ⇒ 명, 자 ⇒ 사람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15년도 예산 56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25조)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9. ~ 9.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불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군”으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이라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0호,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제6호, 제12조제2항, 제2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장 제목 “(환경기본계획등)”을 “(환경보전계획 등)”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1인”을 “각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1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3.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홍보·복원 활동
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5.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제20조 제목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로 한다.

제26조와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군</u>----- ----- ----- ----- ----- ----- -----</p>
<p>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환경</u>"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u>자연환경</u>"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u>생활환경</u>"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u>환경오염</u>"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u>기타</u>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u>환경보전</u>"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u>지구환경보전</u>"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p>제4조(정의) ----- <u>뜻은</u>----- 1.----<u>이란</u>----- ----- 2.-----<u>이란</u>----- ----- ----- 3.-----<u>이란</u>----- ----- ----- 4.-----<u>이란</u>----- <u>그 밖의</u>----- ----- ----- 5.-----<u>이란</u>----- ----- ----- 6.-----<u>이란</u>----- ----- ----- -----</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군의 책무) (생략) 1. ~ 9. (생략) 10. <u>기타</u>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p> <p>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p> <p>제3장 환경기본계획등</p> <p>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시책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5조(군의 책무)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u>그 밖의</u> -----</p> <p>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그 밖의</u>----- ----- ----- ----- ④ (현행과 같음)</p> <p>제3장 환경보전계획 등</p> <p>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생 략)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u>각1인</u>을 포함하여 <u>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u>기타</u>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중에서 위촉한다. ③ (생 략) 1. <u>환경기본계획</u>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6. <u>기타</u>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내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 략)</p>	<p>제10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1명</u>-----<u>15명</u>----- ----- --<u>그 밖의</u>----- -----<u>사람</u>----- ③ (현행과 같음) 1. <u>환경계획</u>----- 2.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의</u>----- ----- ④----- ----- -----<u>범위에서</u>-----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자연 환경의 보전) ① (생 략) ② (생 략)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u>범위 안에서</u> 이루어져야 한다. 2. ~ 3. (생 략) ③ (생 략)</p>	<p>제11조(자연 환경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u>범위에서</u>-----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생 략)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u>기타</u>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u>그 밖의</u>----- -----</p>
<p>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u>군 환경기준</u>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u>이의 유지</u>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지역 배출허용 기준 설정) ① 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5조(지역환경영향평가)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p> <p>① (생 략)</p> <p>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p> <p>① (생 략)</p> <p>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3.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홍보·복원 활동 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5.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 ----- -----</p>
<p>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그 밖의----- -----</p>
<p>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 ----- -----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26조(환경백서) ①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삭 제></p>
<p>제27조(보고) ① 군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삭 제></p>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 제17조2항(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기술개발
2.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3. 옛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 교육·홍보·복원 활동
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
5.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출	군비	56	56	56	56	56	280
세출	지방세	-	-	-	-	-	-
총 비 용(a-b)		56	56	56	56	56	280

3. 관련 의견

-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거창군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통해 후손에의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므로 환경유산 자체가 계상이 불가한 세입이므로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작성자 : 녹색환경과장 김 삼 수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7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 효율 제고.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장 변경함(안 제13조, 별표)
 - 위원회 심의사항 중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
 - 위원장을 현실화함 : 거창군수 ⇒ 녹색환경과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제28조·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 561호)」
Ⅱ. 심의대상, Ⅶ.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완화함(안 별표)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5. 9. 9. ~ 9. 28.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또는”을 “또는 별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를 “녹색환경과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형질변경 사업 기준(제13조제2항 관련)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당 지역은 (1)의 형질변경 기준만 충족하여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심의 범위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의 표 II-3을 적용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구 분 \ 사업계획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의외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기 준	내 용
가.	▶ 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나.	▶ 높이 20미터 이상의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다.	▶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라.	▶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것
마	▶ 경사 25퍼센트 이상에서 높이 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8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제활동(계약의 자유)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삭제함.(안 제16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삭제함(안 제16조제2호·제17조제1호)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7. ~ 10. 0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처리방법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등”을 “처리방법 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계획, <u>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u> 등을 이행할 것</p> <p>3. (생략)</p>	<p>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처리방법 등</u> -----</p> <p>3.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u>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u> 등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p> <p>2. (생략)</p>	<p>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p> <p>-----</p> <p>-----</p> <p>-----</p> <p>1.----- -----<u>처리방법 등</u> -----</p> <p>-----</p> <p>2. (현행과 같음)</p>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89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변경함(안 제19조)

○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나.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21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11. ~ 10. 01.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0조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군민자전거·군민자전거 전용 주차장·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p>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 ----- ----- ----- ----- ----- ----- ----- -----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p>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9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오 순 택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90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계획수립과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업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신설함(안 제3조의2)

다.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농어업보조금 지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별표)

라. 보조금 지원율을 실정에 맞게 반영(안 제6조)

○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100퍼센트 이내로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6,228백만원(2016년도 예산 확보계획)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3. ~ 10.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불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 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보조금””을 ““농어업보조금””으로, “농업”을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인(농가)”를 “농어업인(농어가)”로 “농업법인, 농업인단체”를 “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익발전”을 “농업발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제2호 중 “공익발전”을 “농업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9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한다.

제9조 본문과 각 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농업인단체”를 “농어업인단체”로 “농업법인”을 “농어업법인”으로 하고,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법인은 5억원

제10조와 제11조제4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농업보조금</u>”(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군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p> <p>2. “<u>농업경영체</u>”란 농업을 영위하는 <u>농업인(농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u> 등을 말한다.</p> <p>3. ~ 7. (생략)</p> <p>8. “<u>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u>”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p> <p>9.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정 의) ----- -----</p> <p>1.“<u>농어업보조금</u>”----- ----<u>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u>---- -----</p> <p>2. ----- <u>농어업인(농어가</u>----- <u>농어업법인, 농어업인단체</u>-----</p> <p>3. ~ 7. (현행과 같음)</p> <p>8. <u>농업발전</u>----- ----- -----</p> <p>9.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수출농업기반시설조성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p>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3조에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p>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p>
<p>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p>제6조(보조금 지원율)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u>농업발전</u>----- 3. ----- -----100퍼센트--
<p>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u>농업인단체</u> 또는 <u>농업법인</u>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u>농업인</u>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u>농업인</u>에게 배부 받은 금액을 계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업인</u>은 7천만원 2. <u>농업인단체</u>는 1억5천만원 3. <u>농업협동조합법</u>에 따라 설립된 <u>농업법인</u>은 5억원 	<p>제9조(총액제) -----</p> <p>-----</p> <p>-----<u>농어업인단체</u>-----</p> <p><u>농어업법인</u>-----</p> <p>-----<u>농어업인</u>-----</p> <p>-----<u>농어업인</u>-----</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농어업인</u>----- 2. <u>농어업인단체</u>----- 3. <u>농어업법인</u>은 5억원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일몰제) 일몰제는 <u>농업인</u>에게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p>	<p>제10조(일몰제) -----<u>농어업인</u>----- ----- ----- -----</p>
<p>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p> <p>1. ~ 3. (생략)</p> <p>4.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u>농업인</u>에게 지원하는 보조금</p>	<p>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 ----- -----</p> <p>1. ~ 3. (생략)</p> <p>4. ----- ----- -----</p> <p><u>농어업인</u>-----</p>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100
원예농산물 FTA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 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지원 사업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 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지원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 연구회 육성)지원 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0
농산물 수출 진흥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조 목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농정시책사업에 군비보조금을 투입하여 보조사업 수행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세출	군비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소계(a)	6,228	6,228	6,228	6,228	6,228	31,140
세입	0						
	소계(b)						

3. 관련 의견 : 재원(거창군 자체예산)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영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91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인터넷 쇼핑몰 ‘거창몰’ 용어 정의와 위탁운영 근거 마련
- 나.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다.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
- 라.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거창푸드종합센터 기능 중 거창몰 운영 항목 추가와 직매장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8조)
 - 거창몰 :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 지역에 설치·운영
- 나. 운전자금 지원 근거와 관리현황 보고 기준 마련(안 제29조)
 -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
- 다.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 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삭제함(안 제30조제3항)
 - 위탁취소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0조, 제4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민법」 제75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 80,000천원(2016년 본예산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 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5. 9. 24. ~ 2015. 10. 14.
 -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창몰 :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③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지원사업)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2.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3.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4.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농업”이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6. “농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을 말한다.</p> <p>7. ~ 11. (생략)</p> <p>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거창푸드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p> <p>① 거창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전사판매장: 거창푸드의 전사판매 및 마케팅</p> <p>2. 집하·선별·저장: 거창푸드 농산물의 순회수집·집하·선별·소분 및 저장</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기목-----</p> <p>5.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p> <p>7. ~ 11. (현행과 같음)</p> <p>제5조(거창푸드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 -----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8조(거창푸드종합센터 설치·운영)</p> <p>① ----- ----- ----- -----</p> <p>1. ----- 2. ----- -----</p> <p>3. 거창물: 인터넷을 통한 군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거창푸드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거창푸드종합센터 직매장을 주요지역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9조(위탁운영) ① ~ ⑥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29조(위탁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9조의2(지원사업)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u> <u>2.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u> <u>3.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u> <u>4.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u>
<p>제30조(위탁의 취소) ① ~ ② (생략) <u>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u></p>	<p>제30조(위탁의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p>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푸드종합센터 보조사업별 지원 근거 마련

나. 관련 조문

- 제29조의2제1호 : 농산물품질관리사 운용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2호 : 거창푸드 택배비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3호 : 거창푸드 마케팅 지원 사업
- 제29조의2제4호 : 지역관광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거창푸드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발전
- 거창푸드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지역경제 발전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총 비용(a - b)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세출	도비	-	-	-	-	-
	군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소계(a)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세입	0					
	지방세	-	-	-	-	-
	소계(b)	-	-	-	-	-

3. 관련 의견 : 거창푸드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영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92
----------	-----------

제출연월일	2015. 10.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가공지원센터의 기능(안 제1조 ~ 제4조)

나. 운영위원회 설치와 임무(안 제5조 ~ 제8조)

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용(안 제9조 ~ 제15조)

○ 관리·운영,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 준수사항

라. 운영위탁(안 제16조)

마. 준용, 시행규칙(안 제17조 ~ 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 130백만원(2016년 본예산 편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9. 24. ~ 10.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제5조)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활동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산물을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식품가공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과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과 해지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7.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3. 가공센터의 적정한 가공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군수는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가공물량, 공공요금,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
3.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동을 위하여 가공센터에서 이행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운영위탁 시 경비 지원

나.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 활동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들의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운영위탁)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합계
총 비용(a - b)	130	140	135	130	125	660
세출	군 비	130	150	150	150	730
	소계(a)	130	150	150	150	730
세입						
	소계(b)	0	10	15	20	70

3. 관련 의견

○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농외소득활동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재 영